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신입】 기술직 (안전)	대분류	23. 환경 · 에너지 · 안전
		중분류	6. 산업안전보건
		소분류	01 산업안전관리
		세분류	00 산업안전관리공통직무
능력 단위	○ (산업안전관리) (1)산업안전관리 계획수립, (2)산업안전 위험성평가, (3)사업장 안전점검, (4)산업안전교육, (5)협력업체 산업안전관리, (6)산업재해 대응, (7)산업안전 문서관리, (8)산업안전 보호장비관리		
직무 수행 내용	○ (산업안전관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안전보건절차 등의 제 · 개정, 산업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위험성평가, 안전검사 등 개별업무의 계획수립 · 이행 · 피드백(환류) 및 관련 문서작성 · 관리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등의 계획수립 · 이행 · 점검,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매뉴얼 및 절차의 제 · 개정 -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사업장내 위험요인 파악, 결정, 감소대책 수립, 평가보고서 작성 후 결과환류 등 - 사업장 안전점검 및 순찰계획의 수립, 점검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등 - 안전보건교육 방법 및 교재개발,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계획수립, 실시 및 이수율 관리 등 - 도급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수립 · 운영, 적격 수급업체 선정, 합동 · 순회점검, 협의체 운영,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등 - 재난대응, 산업재해 조사 및 보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참여 등 - 산업안전 관련 문서 및 인허가 서류 등 분류 · 보존 · 관리 업무 - 안전보건 보호구 착용기준 수립, 적격품 선정, 구입, 지급 및 관리 등		
필요 지식	○ (산업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관련 행정규칙 및 각종 기술기준(KOSHA GUIDE 등)에 대한 지식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산업재해 조사 등의 기법 및 개선대책 수립 원칙 - 산업심리, 안전보건교육기법 및 관련 기준 - 안전보호구,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의 안전설계 · 제작 · 설치기준 등		

필요 기술	○ (산업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관련 행정규칙 및 각종 기술기준(KOSHA GUIDE 등)에 대한 검색·활용 및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과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적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타 법령과의 관계 및 각종 판례 조사·분석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산업재해 조사 등의 기법 및 개선대책 수립 원칙 적용 - 산업심리, 안전보건교육기법 및 관련 기준 적용 - 안전보호구,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의 안전설계·제작·설치기준의 현장 적용 등
직무 수행 태도	○ (산업안전관리) - 타부서와의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협력적 태도, 해당 업무와 유사한 외부 사례와 정보를 수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해당관계자 요구 등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과 설득력, 특수성 조사를 위한 분석적 사고, 주변환경에 대한 분석적 사고, 사례를 통한 반복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사명감, 안전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는 노력,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의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합리적 태도, 주의 깊은 관찰 태도, 사고 예방 의지, 객관적 기준에 의한 안전점검 계획 수립 의지, 이해관계자들에게 훈련 결과를 공유하려는 태도
직업 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필요 자격	○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관련 전공 과목	○ 산업안전공학, 인간공학, 작업환경관리, 화학공정안전, 전기안전, 기계안전, 위험성평가, 산업보건학, 안전관리론
관련 자격증	○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참고 사이트	www.ncs.go.kr